

제 호				
수렵 동물 포획 승인서				
승인언은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승인사항	③포획기간		. . . ~ . . .	
	④포획지역		⑤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⑥수렵면허증번호		⑦총기의종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렵장설정자 인				
< 준수사항 >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뒤쪽)

[illegible]